

### Question

공장 소재지 내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사무, 영업직) 직원(02년 3월 입사 - 입사시 건강검진 받음)이 03년 12월 23일과 04년 12월 18일에 건강검진을 받았으나 노동사무소로부터 03년과 04년 건강검진일자가 입사일자보다 늦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부당하다 생각되어 문의드리오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Answer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대한 정기건강검진은 매 1년에 1회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근로자별 입사일자가 상이한 관계로 상기규정에서 1년의 의미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전일까지이며, (예를 들어 1. 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년의 기간은 12. 31. 까지이나, 7. 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년의 기간은 다음해 6. 30. 까지이며, 이러한 식으로 1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1회이상 정기검진을 해야 하나, 만약에 7. 1. 입사한 근로자가 다음해 6. 30. 이전까지 검진을 받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 검진을 받았다면 설사 나중에 검진을 받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Question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 관리감독자 중에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안전담당자 지정은 자체적으로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해진 서식이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정기안전교육은 수급업체(2개 업체) 자체내에서 안전담당자가 교육을 실시하여도 무관한지 함께 문의드리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건설업 제외)의 종류(시행령 별표2)에 해당하면 사업주는 직·조·반장의 지위에서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 서식은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자체적으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3항에 의거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공단 또는 지정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당해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치료사,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Question .....

당 현장의 가설식당(함바)內 및 협력업체 사무실(가설 컨테이너)에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화재탐지설비(화재수신반, 연기감지기 등)를 설치하였는 바 소방화재탐지설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Answer .....

노동부 고시 2002-15(2002. 7. 22) 별표 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소화기, 소화설비 및 방화사 등 화재예방시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 현장내 가설식당(현장직영) 및 협력업체 현장사무실에 소화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가설식당을 식당 운영업자가 경영할 경우에는 소화설비 설치를 현장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Question .....

현장 실착공 이전(선임일자)에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배치되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등의 실제 안전 업무를 보았다면 선임일자 이전이라도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현장실착공일이 2004. 5. 1.이고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일자가 2004. 5. 1.이나 실제 안전관리자 상주일자가 2004. 4. 10. 일 경우 4. 10.부터 4. 30.까지의 안전관리자 급여가 안전관리비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선임신고일자부터 해당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실제 안전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날부터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Answer .....

노동부 고시 2002-15호(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항목에 의하면 전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사업주가 선임하여 노동관서에 보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는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현장에서 실착공 1개월전에 안전관리자가 미리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현장 착공과 함께 안전관리선임신고서를 노동부에 늦게 제출하였더라도 실착공에 관계없이 현장에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객관적 자료에 의거 명확하게 증명이 된다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